

한국금융업계최초
ISO 9001 인증 획득
보험상품개발 시스템완벽구축



약관

넘버원안전보험

이 보험은 배당을 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교보생명**

인 사 말 씀

이땅에 교육보험의 씨를 뿌린 저희 교보
생명을 항상 성원해 주시는 계약자 여러분께
먼저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보생명은 계약자 여러분의 끊임없
는 성원에 힘입어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국내
에서 가장 내실있고 세계에서든 앞서가는 생
명보험 회사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저희 교보생명은 이러한 튼튼한 내실기반
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계약자 여러분에
게 보다 많은 이익을 되돌려 드리고 여러분
가정의 미래를 가꾸고 지켜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 (유의사항).....	2
● (주요보험용어 설명)	3
● (상품구성 및 지급예시)	4
● (약관 주요내용 설명)	10
1. 계약의 효력	10
2. 계약의 무효	10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1
4. 가입자의 고지의무	11
5. 주소 변경통지	12
6.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12
7. 보험금 등 지급절차	13
8. 계약내용의 변경	13
● (생명보험과 세제안내).....	14
1. 보험료 소득공제	14
2. 금융재산 상속공제	14
● (무배당 납버원안전보험 약관).....	15
● (무배당 납버원안전보험 탑승재해보장특약 약관).....	44
● (무배당 납버원안전보험 재해치료비특약 약관).....	59
● (무배당 납버원안전보험 재해입원특약 약관)	77
● (신체부위 설명도)	88



본 약관은 보험계약자께서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한 제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꼭 읽어보시고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서상의 주소, 성명 등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건강상태나 직업 등 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3. 생명보험은 은행예금과 달라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도에 해약을 하시면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보험계약에 관한 상담은 본사의 고객센터부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 영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보험용어 설명

- 보험약관 : 계약의 성립부터 만기시까지의 계약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통 보험약관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계약과특약 : 보험약관중 보통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내용을 주계약이라 하며, 주계약의 보장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주계약과 다른 특별한 약속을 기재하여 주계약에 부가하는 계약내용을 특약이라 함.
-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계약증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지는 사람
- (주)피보험자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생사 등이 보험의 대상이 됨.
- 보험수익자 : 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
- 보험기간 : 보험회사가 보장을 행하는 기간으로,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시작됨.
- 책임개시일 : 계약상의 보장이 개시되는 날
- 계약일 : 통상계약 체결시의 책임개시일과 같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날을 계약일로 함.
- 계약해당일 : 계약후의 보험기간중에 정기적으로 도래하는 계약일의(월 단위의 경우에는 매월)해당일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적립되는 적립금
- 해약환급금 :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상품구성 및 지급예시

1. 상품구성 및 코드

가. 상품구성

무배당 멤버원안전보험 주계약	
+	【 무배당 멤버원안전보험 탑승재해보장특약 】
+	【 무배당 멤버원안전보험 재해치료비특약 】
+	【 무배당 멤버원안전보험 재해입원특약 】

(단, 【 】는 선택부가)

나. 상품코드

구 분	판 매 코 드
남 자	30680 - 00
여 자	30681 - 00

(- 00은 특약부가)

2. 보험금등 지급예시

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기준)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8,000만원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교통재해 장해연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 1급 : 매월 300만원× 10년 제 2급 : 매월 150만원× 10년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 3급 ~ 제 4급 : 1,000만원 제 5급 ~ 제 6급 : 5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일반재해 장해연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 1급 : 매월 100만원× 10년 제 2급 : 매월 50만원× 10년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 3급 ~ 제 4급 : 600만원 제 5급 ~ 제 6급 : 300만원
만기축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3년만기 : 이미 납입한보험료의 70% 5년만기 : 이미 납입한보험료의 80% 7, 10년만기 : 이미 납입한보험료의 90%

※ 장해연금은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나. 탑승재해보장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휴일 차량탑승중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억 4,500만원
휴일 무보험· 뺑소니차량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무보험 차량· 뺑소니차량에 의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억 4,500만원
휴일 항공기· 선박· 열차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항공기· 선박·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억 2,000만원
평일 차량탑승중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7,000만원
평일 무보험· 뺑소니차량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무보험 차량· 뺑소니차량에 의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7,000만원
평일 항공기 · 선박· 열차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항공기· 선박·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억 2,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휴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차량탑승중, 무보험· 뺑소니차량, 항공기· 선박·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4,000 만원
휴일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 만원
휴일 교통재해 장해연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급 : 매월 150만원× 10년 2급 : 매월 75만원× 10년
휴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장해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급 ~ 4급 : 500만원 5급 ~ 6급 : 250만원
휴일 일반재해 장해연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급 : 매월 50만원× 10년 2급 : 매월 25만원× 10년
휴일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급 ~ 4급 : 300만원 5급 ~ 6급 : 150만원

다. 재해치료비특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골절치료급여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이 발생하였을 때	(골절발생 1회당) 30만원
응급치료자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사고 1회당) 20만원
수술급여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하였을 때	(수술 1회당) 100만원

※ 상기의 지급사유중 골절치료급여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될지라도 재해발생 1회당 1회만 지급합니다.

라. 재해입원특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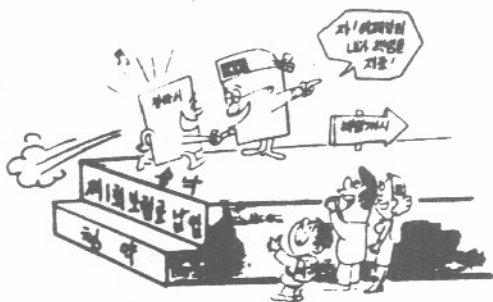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입원급여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1일당 1만원

약관 주요내용 설명

1. 계약의 효력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승낙을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계약의 무효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나. 만15세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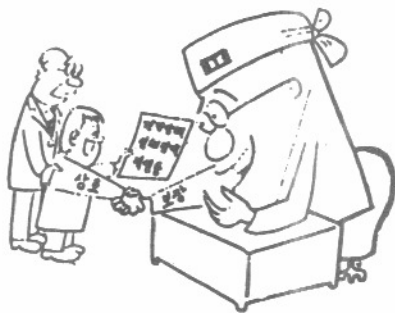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용 및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는 다음 경우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나.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가입자의 고지의무

생명보험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서 상호보장하여 서로 돕는 제도입니다. 보통 가입시 처음부터 건강상태가 나쁜 사람이나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계약하면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건강상태, 신체장애상태, 직업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주소 변경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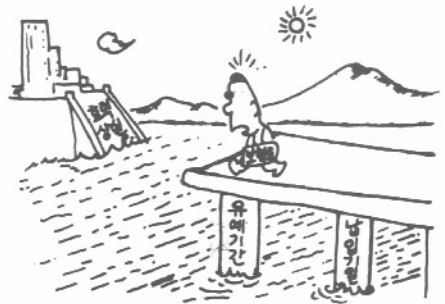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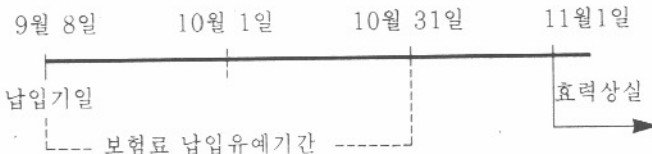
6.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계약자는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늦어도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유예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유예기간의 만료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계약의 효력상실 상태에서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도해





7. 보험금 등 지급절차

- 가. 회사는 수익자 또는 계약자로부터 소정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와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 나.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지급사유만 참조)

구비서류	보험증권 과최종납 입영수증	주 민 등록증	도 장	해 당 진단서	비 고
수령인	지급사유				
보험금 수익자	만 기 · 생 존 시	○	○		회사통장 발행시는 증권대신 통장사용
	입원 · 장해 · 기타	○	○	○ (인감)	① 사망시 사망 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사 망 시	○	○	○ (인감)	② 재해시 재해를 증명하는 서류(해당 경찰서장 확인서 추가)
계약자	해 약 시	○	○	○	
	대 출 시	○	○	○	
대리인	(1) 상기 해당서류, 수익자(단, 해약, 계약자대출은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사용 용도) 명시 및 위임장(인감도장)을 필히 지참 (2) 대리수령인의 도장 및 주민등록증				

※ 회사는 상기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8.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계약은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계약자의 소득수준, 가족수, 기호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보험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 수익자 등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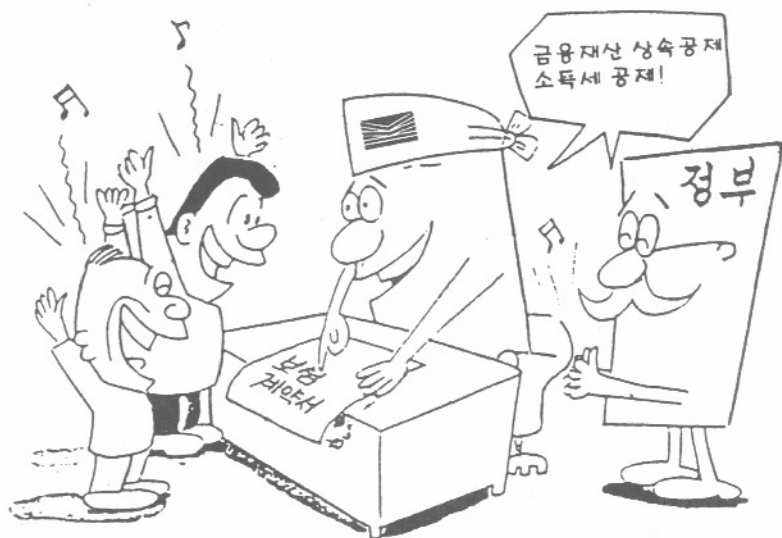
생명보험에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1. 보험료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근로소득자가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중 년 50만원까지 보험료 소득공제가 되어 소득세, 주민세의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법 제22조)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등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됩니다.



무배당 멤버원안전보험 약관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17
제 2 조 (계약의 효력)	17
제 3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18
제 4 조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18
제 4 조의 2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19
제 5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19
제 5 조의 2 (대표자의 지정)	19
제 6 조 (계약의 무효)	19
제 7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0
제 8 조 (배당금의 지급)	22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22
제10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23
제11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23
제12조 (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24
제13조 (보험료의 납입)	24
제14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지)	25
제15조 (주소변경 통지)	25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25
제17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26
제18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26
제19조 (보험금 등의 지급)	26
제20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27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	27
제21조의 2 (피보험자의 변경)	28
제2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29
제23조 (약관대출)	29
제23조의 2 (계약내용의 교환)	29
제24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30
제25조 (분쟁의 조정)	30
제26조 (관할법원)	30
제27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30
제28조 (준거법)	30

무배당 멤버원안전보험 약관

제 1조 【 보험계약의 성립 】

(1)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 (이하 "무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 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조 【 계약의 효력 】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보험료를 받은 날을 “ 책임개시일” 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 보험계약일” 로 봅니다)

(2)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 11조 (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

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 11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4) 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6) 이 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 21조의 2(피보험자의 변경)가 적용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3조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

보험을 모집한 자 (이하 "모집인등" 이라 합니다) 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지점,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 (서류, 사진, 도화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4조 【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

(1) 회사가 제1회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10.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4조의 2 【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

- (1)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2) 계약자가 청약시까지 약관의 전달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5조 【 보험수익자의 지정 】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 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7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5조의 2 【 대표자의 지정 】

- (1)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3) 계약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6조 【 계약의 무효 】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 7조 【 보험금의 지급사유 】

(1)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별표3(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2.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3.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별표4에서 정하는 장애등급분류표(이하 "장애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 장애연금 지급
4.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애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 장애급여금 지급
5.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애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 장애연금 지급
6.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애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 장애급여금 지급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 만기축하금 지급

(2)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4)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종목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만을 드립니다.

(5) 제4항에 규정한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 발생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뺀 차액을 드립니다.

(6) 제4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해서는 이미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5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전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7)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의 장해연금은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8) 제1항 제7호의 살아 있을 경우는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상태를 포함합니다.

제 8조 【 배당금의 지급 】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9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1)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0조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제 11조 【 가입자의 고지의무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은 제외)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고지의무" 라 합니다) 합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3)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하며,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5)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립니다.

제 12조 【 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 보험료의 납입 】

(1)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2)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 14조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수익자는 제 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15조 【 주소변경 통지 】

- (1)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2)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 16조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

- (1) 제 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2)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 (3)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까지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제 17조 【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

(1)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10.5%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 2조(계약의 효력), 제 4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 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18조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1)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재해를 증명하는 서류 (재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19조 【 보험금등의 지급 】

(1) 회사는 제 1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책임준비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립니다.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 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뢰기관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4) 이 약관에 의한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예시표" 참조)

(5) 회사는 만기축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6) 만기축하금 또는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20조 【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

(1)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 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 19조(보험금 등의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10.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21조 【 계약내용의 변경 】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수익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2)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3)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19조(보험금등의 지급)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4)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21조의 2 【 피보험자의 변경 】

(1)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담보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피보험자는 변경되는 피보험자와 같은 성(性)에 한합니다.

(2) 회사는 새로운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의 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경우 변경되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변경신청서(회사 양식)를 접수한 때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4) 제3항의 경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5) 제1항에 의한 피보험자 변경시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 변경의 신청 및 승낙에 있어서는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 2조(계약의 효력) 제2항 내지 제5항, 제 4조(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제 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22조 【 계약자의 임의해지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23조 【 약관대출 】

-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 (3) 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23조의 2 【 계약내용의 교환 】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계약일, 보험종목
-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 24조 【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25조 【 분쟁의 조정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6조 【 관할법원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27조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28조 【 준거법 】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 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 10만원

· 10년만기, 전기월납

경과기간	남 자		여 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1,272	0	492	0
3년	3,816	1,356	1,476	529
5년	7,440	4,701	2,892	1,835
7년	11,064	8,449	4,308	3,298
10년	16,500	14,850	6,432	5,789

보험금 지급기준표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기준)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약관 제 7조 제1항 제1호)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8,000만원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약관 제 7조 제1항 제2호)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교통재해 장해연금 (약관 제 7조 제1항 제3호)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 1급 : 매월 300만원× 10년 제 2급 : 매월 150만원× 10년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약관 제 7조 제1항 제4호)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 3급 ~ 제 4급 : 1,000만원 제 5급 ~ 제 6급 : 5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일반재해 장해연금 (약관 제 7조 제1항 제5호)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 1급 : 매월 100만원× 10년 제 2급 : 매월 50만원× 10년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약관 제 7조 제1항 제6호)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 3급 ~ 제 4급 : 600만원 제 5급 ~ 제 6급 : 300만원
만기축하금 (약관 제 7조 제1항 제7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3년만기 : 이미 납입한보험료의 70% 5년만기 : 이미 납입한보험료의 80% 7,10년만기 : 이미 납입한보험료의 90%

※ 장해연금은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1.1 시행) 중 “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사이클 탑승자	V20~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V30~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철도사고 포함)	V80~V89
10. 수상 운수사고	V90~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V97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V99
13. 추락	W00~W19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W64
16. 불의의 익수	W65~W74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W99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X19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	X20~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X39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X59
25. 가해	X85~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Y84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 제 외 사 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 중 처형 (Y35.5)

교통재해분류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 (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구내 (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다.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 부터의 낙화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에레베이타 및 에스카레이타 등
-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 다. 항공기, 선박 (윗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 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 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신 체 장 해
제1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3급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4급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 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4급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5급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6급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 해 등 급 분 류 해 설)

1. "항상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 2) 정신장애로 인하여 자택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3)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활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 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시력의 뚜렷한 장애"

시력이 0.06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 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口, ㅂ, ㅍ),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ㅈ, ㅊ), 후두음(ㅇ, ㅎ) 중 3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 (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써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애"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써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frac{1}{6}(a + 2b + 2c + d)$ 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컷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들

지 못하는 것) 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의 뚜렷한 장애"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 (청력검사단위) 이상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 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애"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 대관절(팔은 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 다리는 골반관절·무릎·발목) 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수 없는 경우 (인공관절 포함) 에도 이에 준한다.

12.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애"

팔다리 각각의 3 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3.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심한 운동장애"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 " 척추의 운동장애"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손가락의 장애"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 (끝에서 첫째마디) [첫째 손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마디)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첫째 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 완전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발가락의 장애"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발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마디)의 1/2 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종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첫째 발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 완전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애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 6, 7, 8, 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무배당 멤버원안전보험 탑승재해보장특약 약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멤버원안전보험 탑승재해보장특약을
선택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인형, 배우자형중 본인형의 약관내용만을 적용합니다.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46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46
제 3 조 (“차량탑승중 교통사고”의 정의)	46
제 4 조 (“뺑소니사고 및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의 정의)	47
제 5 조 (“항공기 · 선박 ·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의 정의)	47
제 6 조 (“휴일” 및 “평일”의 정의)	47
제 7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47
제 8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50
제 9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50
제10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50
제11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51
제12조 (보험금등의 지급)	51
제13조 (특약내용의 변경)	52
제1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52
제15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52

무배당 멤버원안전보험 탑승재해보장특약 약관

제 1조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 (1)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2)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3)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와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에 정한 피보험자가 사망[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제 2조 【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 (1)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하고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 "피보험자"와 "배우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 (2) 이 특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1항의 배우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로부터 배우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사망으로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이후 새로이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배우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제 3조 【 "차량탑승중 교통사고"의 정의 】

- (1) 이 계약에 있어서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합니다.
- (2) 제1항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

별구분)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 4조 【 "뺑소니사고 및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의 정의 】

(1) "뺑소니 사고" 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고 경찰관서에서 뺑소니 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 차량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포함)의 대인배상종합보험(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가해자동차가 2대이상인 경우 모두가 무보험 자동차인 경우에 한합니다.

제 5조 【 "항공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의 정의 】

이 계약에 있어서 "항공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라 함은 별표 4 (항공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항공 및 우주운수사고,수상운수사고,철도사고를 말합니다.

제 6조 【 "휴일" 및 "평일"의 정의 】

이 계약에서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하고, "평일" 이라 함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날로 합니다.

제 7조 【 보험금의 지급사유 】

(1)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휴일 차량탑승중 교통사고사망보험금 지급
2.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무보험 차량·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휴일 무보험·뺑소니 차량 사망보험금 지급
3.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항공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휴일 항공기·선박·열차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4.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평일 차량탑승중 교통사고사망보험금 지급
5.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무보험 차량·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평일 무보험·뺑소니차량 사망보험금 지급
6.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항공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평일 항공기·선박·열차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7.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별표3(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중 차량탑승중, 무보험·뺑소니차량, 항공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휴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8.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휴일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9.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별표5에서 정하는 장애등급분류표(이하 "장애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애상태 되었을 때
: 휴일 교통재해장해연금 지급
10.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애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 교통재해장해급여금 지급

11.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 일반재해장해연금 지급

12.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 일반재해장해급여금 지급

(2)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4) 제1항 제9호 내지 제12호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종목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만을 드립니다.

(5) 제4항에 규정한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 발생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을 뺀 차액을 드리며, 이후 장해연금은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드립니다.

(6) 제4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해서는 이미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5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전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이 지
급되지 않았던 장해

(7) 제1항의 제9호 또는 제11호의 재해장해연금은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
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8) 차량탑승중에 무보험 차량 또는 뺑소니 차량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9)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8조 【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기간으로 합니다.

(1)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
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습니다.

제 9조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10조 【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

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11조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1)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재해를 증명하는 서류 (재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12조 【 보험금등의 지급 】

(1) 회사는 제1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특약의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3) 이 특약에 의한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해약환급금예시표" 참조)

(4)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13조 【 특약내용의 변경 】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14조 【 계약자의 임의해지 】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15조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1)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2)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 10만원

· 10 년만기, 전기월납, 본인형

경과기간	남 자		여 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552	0	240	0
3년	1,656	0	720	0
5년	2,760	0	1,200	0
7년	3,864	0	1,680	0
10년	5,520	0	2,400	0

보험금 지급기준표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휴일 차량탑승중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억 4,500만원
휴일 무보험· 뺑소니차량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무보험 차량· 뺑소니차량에 의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억 4,500만원
휴일 항공기· 선박· 열차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항공기· 선박·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억 2,000만원
평일 차량탑승중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7,000만원
평일 무보험· 뺑소니차량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무보험 차량· 뺑소니차량에 의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7,000만원
평일 항공기 · 선박· 열차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항공기· 선박·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억 2,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휴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차량탑승중, 무보험· 뺑소니차량, 항공기·선박·열차 에 의한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하였을 때	4,000 만원
휴일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때	1,000 만원
휴일 교통재해 장해연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급 : 매월 150만원×10년 2급 : 매월 75만원×10년
휴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급~4급 : 500만원 5급~6급 : 250만원
휴일 일반재해 장해연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1급 : 매월 50만원×10년 2급 : 매월 25만원×10년
휴일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급~4급 : 300만원 5급~6급 : 150만원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무배당 멤버원안전보험 주계약 별표 2 "재해분류표" 와 동일

(별표 3)

교통재해분류표 분류표

무배당 멤버원안전보험 주계약 별표 3 "교통재해분류표" 와 동일

항공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 분류표

이 보험에서 항공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분류표에 따른 항공 및 운수사고, 수상운수사고, 철도사고를 말합니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1.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항공 및 우주운수사고	
탑승자가 다친 동력 항공기 사고	V95
탑승자가 다친 무동력 항공기 사고	V96
기타 명시된 항공 운수사고	V97
2. 수상운수사고	
익수의 원인이 된 선박사고	V90
기타 손상의 원인이 된 선박사고	V91
선박사고가 없는 수상운수 관련익수	V92
익수의 원인이 아닌 선박사고가 없는 선상사고	V9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수상운수사고	V94
3. 철도사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충돌로 다친 보행자	V05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충돌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5
운수사고에서 다친 열차 또는 철도차량 탑승자	V81

(주)

1. 사고가 없는 선박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수영자 또는 잠수부의 익수사고는 수상운수 사고에서 제외됩니다.
2. 자동차와의 충돌에 의한 철도사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 수리고내의 사고, 원형기관차고 또는 전차대에서의 사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관련되지 않은 철도구내의 사고, 천재지변에 의한 철도사고는 철도사고에서 제외됩니다.

(별표 5)

장해등급분류표 분류표

무배당 넘버원안전보험 주계약 별표 4 "장해등급분류표" 와 동일

무배당 멤버원안전보험 재해치료비특약 약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멤버원안전보험 재해치료비특약을
선택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인형, 배우자형중 본인형의 약관내용만을 적용합니다.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61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61
제 3 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61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62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62
제 6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63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63
제 8 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64
제 9 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64
제10조 (보험금등의 지급)	64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65
제1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66
제13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66

무배당 멤버원안전보험 재해치료비특약 약관

제 1조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 (1)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2)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3)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와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에 정한 피보험자가 사망[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조 【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 (1)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하고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 "피보험자"와 "배우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 (2) 이 특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1항의 배우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로부터 배우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별표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사망으로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이후 새로이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배우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제 3조 【 입원의 정의와 장소 】

이 특약에 있어서 “ 입원 ” 이라 함은 국내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 의사 ” 라 합니다)에 의하여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

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4조 【 보험금의 지급사유 】

(1)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별표2 (골절분류표)에서 정하는 골절(이하 "골절" 이라 합니다)이 발생하였을 때
: 골절치료급여금 지급 (단,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될지라도 재해발생 1회당 1회만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 응급치료자금 지급 (사고 1회당)
3.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별표4(수술의종류)에서 정하는 수술을 하였을 때
: 수술급여금 지급 (수술 1회당)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3)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5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1)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
약 이 더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
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제 6조 【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기간까지로 합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
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습니다.

제 7조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8조 【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

-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2)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3)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9조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 (1)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골절진단서, 수술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10조 【 보험금등의 지급 】

- (1) 회사는 제 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3)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 의료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진단에 필요한 검사자료등의 제출을 포함합니다)에 동의하여야 하며, 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가 지정한 의사가 진단 및 진료내용, 입원기간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의사와 회사의 의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회사가 지정한 의사” 및 “제3의 의사”는 의료보험법에서 정하는 제3차 진료기관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4) 제1항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에 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 조사, 확인 또는 진단을 완료할 때까지 급여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5)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예시표" 참조)

(6)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11조 【 특약내용의 변경 】

(1)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12조 【 계약자의 임의해지 】

- (1)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13조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 ①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 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 준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구 분	남 자		여 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 년	300	0	240	0
3 년	900	0	720	0
5 년	1,500	0	1,200	0
7 년	2,100	0	1,680	0
10 년	3,000	0	2,400	0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골절치료급여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이 발생하였을 때	(골절발생 1회당) 30만원
응급치료자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사고 1회당) 20만원
수술급여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하였을 때	(수술 1회당) 100만원

※ 상기의 지급사유중 골절치료급여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될지라도 재해발생 1회당 1회만 지급합니다

(별표 2)

골 절 분 류 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골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1993-3호, 1995.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골 절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
	2. 목의 골절	S12
	3. 늑골, 흉골 및 흉추골의 골절	S22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5.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S42
	6. 아래팔의 골절	S52
	7.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S62
	8. 대퇴골의 골절	S72
	9.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0.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1.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T02
	12.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T08
	13. 상세불명 부위의 상지 골절	T10
	14. 상세불명 부위의 하지 골절	T12
	15.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골절	T14.2

(별표 3)

재 해 분 류 표

무배당 멤버원안전보험 주계약 별표 2 "재해분류표" 와 동일

수술의 종류

수	술	종	류
피부· 유방의 수술 (皮膚· 乳房의 手術)	1. 식피술 (植皮術) (25cm ² 미만은 제외함) 2. 유방절단술 (乳房切斷術)		
근골의 수술 (筋骨의 手術) [발정술 (拔釘術)은 제외함]	3. 골이식술 (骨移植術) 4. 골수염· 골결핵 수술 (骨髓炎· 骨結核 手術) [농양 (膿瘍)의 단순한 절개는 제외함] 5. 두개골 관혈수술 (頭蓋骨 觀血手術) [비골· 비중격 (鼻骨· 鼻中隔)은 제외함] 6. 비골 관혈수술 (鼻骨 觀血手術) [비중격만곡증수술 (鼻中隔彎曲症手術)은 제외함] 7. 상악골· 하악골· 악관절 관혈수술 (上顎骨· 下顎骨· 顎關節 觀血手術) [치· 치육 (齒· 齒肉)의 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8. 척추· 골반 관혈수술 (脊椎· 骨盤 觀血手術) 9. 쇄골· 견갑골· 늑골· 흉골 관혈수술 (鎖骨· 肩胛骨· 肋骨· 胸骨 觀血手術) 10. 사지절단술 (四肢切斷術)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11. 절단사지재접합술 (切斷四肢再接合術) [골· 관절 (骨· 關節)의 이단 (離斷)에 수반 하는 것] 12. 사지골· 사지관절 관혈수술 (四肢骨· 四肢關節 觀血手術)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수	술	종 류
근골의 수술 (筋骨의 手術) [발정술 (拔釘術)은 제외함]	13. 근· 건· 인대 관혈수술 (筋· 腱· 靱帶 觀血手術)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근염· 결절종· 점액종수술 (筋炎· 結節腫· 粘液腫手術)은 제외함]	
호흡기· 흉부의수술 (呼吸器· 胸部의 手術)	14. 만성부비강염근본수술(慢性副鼻腔炎根本手術) 15. 후두전적제술 (喉頭全摘除術) 16. 기관· 기관지· 폐· 흉막수술 (氣管· 氣管支· 肺· 胸膜手術) [개흉술 (開胸術)을 수반하는 것] 17. 흉곽형성술 (胸廓形成術) 18. 종격종양적출술 (從隔腫瘍摘出術)	
순환기· 비의 수술 (循環期· 脾의 手術)	19. 관혈적혈관형성술 (觀血의血管形成術) [혈액투석용 (血液透析用) 의 Shunt형성술 (形成術)을 제외함] 20. 정맥류근본수술 (靜脈瘤根本手術) 21. 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관동맥수술 (大動脈· 大靜脈· 肺動脈· 冠動脈手術) [개흉, 개복술 (開胸, 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22. 심막절개· 봉합술 (心膜切開· 縫合術) 23. 직시하심장내수술 (直視下心臟內手術) 24. 체내용 (體內用) Pace Maker 매립술 (埋立術) 25. 비적제술 (脾摘除術)	

수	술	종 류
소화기 수술 (消化器 手術)	26. 이하선종양적출술 (耳下腺腫瘍摘出術) 27. 악하선종양적출술 (顎下腺腫瘍摘出術) 28. 식도이단술 (食道離斷術) 29. 위절제술 (胃切除術) 30. 기타의 위·식도수술 (胃·食道手術) [개흉·개복술 (開胸·開腹術) 을 수반하는 것] 31. 복막염수술 (腹膜炎手術) 32. 간장·담낭·담도·췌장 관혈수술 (肝臟·膽囊·膽道·胰臟 觀血手術)	
소화기 수술 (消化器 手術)	33. 탈장 근본수술 (脫腸 根本手術) 34. 충수절제술·맹장봉축술 (蟲垂切除術·盲腸縫縮術) 35. 직장탈근본수술 (直腸脫根本手術) 36. 기타의 장·장간막수술 (腸·腸間膜手術) [개복술 (開腹術) 을 수반하는 것] 37. 치루·탈항·치핵근본수술 (痔屢·脫肛·痔核根本手術) [근치 (根治) 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처치. 단순한 치핵 (痔核) 만의 수술은 제외함]	

수	술	종 류
뇨· 성기의 수술 (尿· 性器의 手術)	38. 신이식수술 (腎移植手術) [수용자 (受容者)에 한함] 39. 신장· 신우· 뇨관· 방광 관혈수술 (腎臟· 腎盂· 尿管· 膀胱 觀血受術) [경뇨도적조작 (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40. 뇨도협착 관혈수술 (尿道狹窄 觀血手術) [경뇨도적조작 (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41. 뇨루폐쇄 관혈수술 (尿屢閉鎖 觀血手術) [경뇨도적조작 (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42. 자궁광범전적제술 (子宮廣汎全摘除術) [단순자궁전적 (單純子宮全摘)등의 자궁전적 제술 (全摘除術)은 제외함] 43. 자궁경관형성술, 자궁경관봉축술 (子宮頸管形成術, 子宮頸管縫縮術) 44. 제왕절개만출술 (帝王切開娩出術) 45. 자궁외임신수술 (子宮外妊娠手術) 46. 자궁탈· 질탈수술 (子宮脫· 陰脫手術) 47. 기타의 자궁수술 (子宮手術) [자궁경관 Polyp 절제술, 인공임신중절술 (子宮頸管 Polyp 切除術, 人工妊娠中絶術)은 제외함] 48. 난관· 난소관혈수술(卵管· 卵巢觀血手術) [경질적조작 (頸腔的操作)은 제외함] 49. 기타의 난관· 난소수술(卵管· 卵巢手術)	
내분비기의 수술 (內分泌器의 手術)	50. 하수체종양적제술 (下垂體腫瘍摘除術) 51. 갑상선수술 (甲狀腺手術) 52. 부신전적제술 (副腎全摘除術)	

수	술	종	류
신경의 수술 (神經의手術)	53. 두개내 관혈수술 (頭蓋內 觀血手術) 54. 신경관혈수술 (神經 觀血手術) [형성술· 이식술· 절제술· 감압술· 개방 술· 염제술 (形成術· 移植術· 切除術· 減壓術 · 開放術· 捻除術)] 55. 관혈적척수종양적출수술 (觀血의脊髓腫瘍摘出手術) 56. 척수경막내외 관혈수술 (脊髓硬膜內外觀血手術)		
감각기. 시기의수술 (感覺器. 視器의手術)	57. 안검하수증수술 (眼瞼下垂症手術) 58. 누소관형성술 (淚小管形成術) 59. 누낭비강문합술 (淚囊鼻腔吻合術) 60. 결막낭형성술 (結膜囊形成術) 61. 각막이식술 (角膜移植術) 62. 관혈적전방· 홍채· 초자체· 안와내이물 제거술 (觀血의前房· 虹彩· 硝子體 · 眼窩內異物除去術) 63. 홍채전후유착박리술 (虹彩前後癒着剝離術) 64. 녹내장 관혈수술 (綠內障 觀血手術) 65. 백내장· 수정체 관혈수술 (白內障· 水晶體 觀血手術) 66. 초자체 관혈수술 (硝子體 觀血手術) 67. 망막박리증수술 (網膜剝離症手術) 68. Laser 냉동응고 (冷凍凝固) 에 의한 안 구수술 (眼球手術) [시술 (施術) 개시일로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69. 안구적제술, 조직충진술 (眼球摘除術, 組織充填術) 70. 안와종양적출술 (眼窩腫瘍摘出術) 71. 안근이식술 (眼筋移植術)		

수	술	종 류
감각기· 청기의수술 (感覺器· 聽器의手術)	72. 관혈적고막, 고실형성술 (觀血的鼓膜, 鼓室形成術) 73. 유양동삭개술 (乳樣洞創開術) 74. 중이근본수술 (中耳根本手術) 75. 내이 관혈수술 (內耳 觀血手術) 76. 청신경종양적출술 (聽神經腫瘍摘出術)	
악성신생물수술 (惡性新生物手術)	77. 악성신생물근치수술(惡性新生物根治手術) 78. 악성신생물온열료법(惡性新生物溫熱療法) [시술(施術) 개시일로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79. 기타의 악성신생물수술(惡性新生物手術)	
상기이외의 수술 (上記以外の手術)	80. 상기이외의 개두술 (開頭術) 81. 상기이외의 개흉술 (開胸術) 82. 상기이외의 개복술 (開腹術) 83. 충격파 (衝擊波)에 의한 체내결석파쇄술 (體內結石破碎術)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84. Fiberscope 또는 혈관 (血管) Basket Catheter 에 의한 뇌· 후두· 흉부· 복부장기수술 (腦· 喉頭· 胸部· 腹部臟器手術) [검사· 처치는 포함하지 않음.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신생물근치 방사선 조사 (新生物根治 放射線 照射)	85.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 (新生物根治 放射線照射) [5,000 Rad 이상의 조사(照射)로 시술(施術)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 수술분류표상의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 의료가기법으로 시술한 경우에는 수술분류표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비 고

1.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 이란 치료를 위한 입원을 말하며, 예를들어
미용상의 치료, 정상분만,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인간독크 검사등을 위한 입원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 이란 치료를 위한 치료를 말하며,
예를들어
미용성형수술,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
는 제왕절개수술, 충수의 예방적수술 등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개두술

"개두술" 이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4. 개흉술

"개흉술" 이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
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 흉골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5. 개복술

"개복술" 이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무배당 멤버원안전보험 재해입원특약 약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멤버원안전보험 재해입원특약을
선택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인형, 배우자형중 본인형의 약관내용만을 적용합니다.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79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79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79
제 4 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80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80
제 6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81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82
제 8 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82
제 9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82
제10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82
제11조 (보험금등의 지급)	83
제12조 (특약내용의 변경)	84
제1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84
제14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84

무배당 멤버원안전보험 재해입원특약 약관

제 1조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 (1)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2)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3)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와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에 정한 피보험자가 사망[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조 【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 (1)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하고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 "피보험자"와 "배우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 (2) 이 특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1항의 배우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로부터 배우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사망으로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이후 새로이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배우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제 3조 【 보험금의 지급사유 】

- (1)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특약의 보험기간중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 (이하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 [제3조(입원의 정의와장소)에 정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

- 원한 것으로 봅니다] 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2) 제 1항 제1호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3) 제 2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4일이상 입원을 하고 퇴원후 동일한 재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재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서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그러나 동일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재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4)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6)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4조 【 입원의 정의와 장소 】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대한민국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 (이하 "의사" 라 합니다) 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 제 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5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 (1)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입원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입원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입원급여금에 해당하는 해약 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3)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기간으로 합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7조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8조 【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9조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1) 수익자는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고의로 지체함으로 인하여 의료비, 기타의 비용이 증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비용을 입원급여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0조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1)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병원 또는 의원의 입·퇴원확인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11조 【 보험금등의 지급 】

(1) 회사는 제1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입원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특약의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3)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 의료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진단에 필요한 검사자료등의 제출을 포함합니다)에 동의하여야 하며, 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가 지정한 의사가 진단 및 진료내용, 입원기간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의사와 회사의 의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회사가 지정한 의사” 및 “제3의 의사”는 의료보험법에서 정하는 제3차 진료기관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4) 제1항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에 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 조사, 확인 또는 진단을 완료할 때까지 급여금의 지

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5)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예시표" 참조)

(6)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12조 【 특약내용의 변경 】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13조 【 계약자의 임의해지 】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14조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1)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2)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 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 10만원
· 10 년만기, 전기월납, 본인형

경과기간	남 자		여 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60	0	60	0
3년	180	0	180	0
5년	300	0	300	0
7년	420	0	420	0
10년	600	0	600	0

(별 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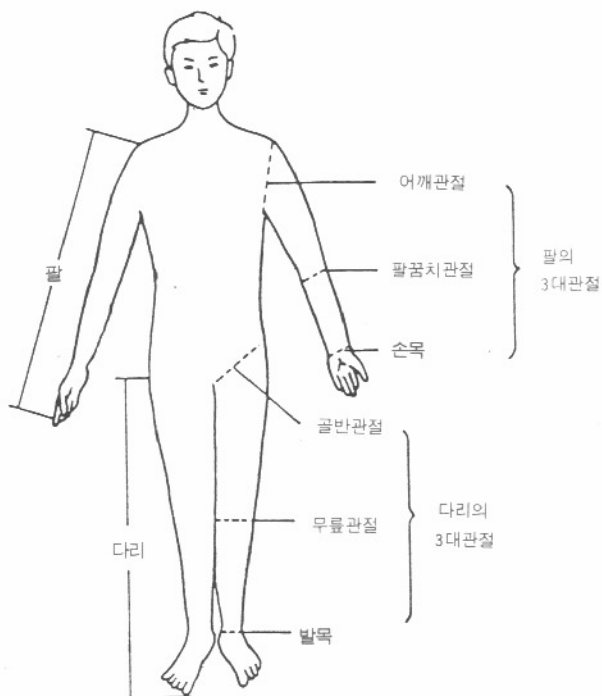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입원급여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1일당 1만원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무배당 멤버원안전보험 주계약 별표 2 "재해분류표" 와 동일

신체부위 설명도



“교보생명은 어디에서나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본사 : 서울종로구종로1가1번지
TEL : 721-2121, 3131

동 대 전 226-4080/4
서 대 전 255-3895/6

평촌 (0343) 57-2761/3
령택 (0333) 53-8457/8
구리 (0346) 64-7177

지 역 본 부			
강남	(02)	3473-8070/6	
동부	(02)	290-4134/6	
서부	(02)	705-9532/5	
경인	(032)	430-4130/6	
부산	(051)	811-7130/5	
제주	(042)	229-5524/8	
대구	(053)	620-7530/35	
대전	(042)	510-6530/35	

인 천			
동부	암평천	425-1081	
인제	물포동	512-1307/8	
남양	제양	421-8017/8	
계양	동양	430-4250/5	
		471-8433	
		552-2037/8	

강 원			
춘천	(0361)	57-8922	
강릉	(0391)	648-6110	
원주	(0371)	45-9230/2	

부 산			
금정	(051)	553-7810/1	
남부		811-7184/5	
동래		864-2371/2	
동부		643-9251/2	
서부		864-3931/2	
송도		462-9611/2	
부산		248-0641/2	
중부		462-1485/6	
서면		819-4973/4	
		637-4100/5	

충 북			
청주	(0431)	53-9491/4	
서청	(0431)	66-2751	
충주	(0441)	848-5201/2	

대 구			
북대	(053)	940-6171/6	
달서		620-7610	
동대		940-6081/7	
대구		425-2301/2	
팔도		753-8450/1	

충 남			
서해	(0451)	32-5956/7	
천안	(0417)	551-8593/4	

광 주			
동광	(062)	524-9390	
북광		510-6630/2	
남광		671-6582	
서광		510-6590/6	

경 북			
경주	(0561)	774-2212	
안동	(0571)	859-2531	
남포	(0562)	71-6180,	
		71-6101/2	
포항	(0562)	71-6243/9	
구미	(0546)	53-0451/2	

경 기			
동수	(0331)	44-4310/1	
광명	(02)	894-2491/2	
중동	(032)	612-4061/2	
동성	(0342)	750-7150	
동부	(0343)	43-6441/2	
안양	(032)	651-6011	
상남	(0342)	750-7070/9	
수원	(0331)	32-1751	
안양	(0343)	49-2427	
안산	(0345)	403-0635/6	
밀양	(0344)	922-0161/5	
부산	(0342)	704-8406/7	
의정부	(0351)	877-2259	

경 남			
남울	(0522)	65-1611/2	
마산	(0551)	23-1642/3	
울산	(0522)	75-2711/2	
진주	(0591)	758-3944/5	
창원	(0551)	84-3359	
통영	(0557)	42-0727	
동울	(0522)	36-61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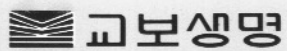
전 북			
군산	(0654)	446-9921/4	
남전	(0652)	87-2950	
익산	(0653)	841-5411/2	
북전	(0652)	259-5140/3	
전주	(0652)	259-5100/8	

대 전			
대전	(042)	229-5570/5	
대전		229-5633	

전 남			
목포	(0631)	44-9252	
순천	(0661)	52-2669	
여수	(0662)	42-1518	
영암	(0639)	73-2903	

제 주			
제주	(064)	22-3670	

고객서비스부 (02)630-1111



교보생명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대표전화 721-2121, 3131